

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8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4월 29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특별시교육상은 모든 부문에서 일반 시민이 수상할 수 있음에도 조문 표현상 특정 부문만 수상할 수 있다고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바, “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”의 명칭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상부문 중 “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”을 “교육협력부문”으로 수정함(안 제3조제7호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7호 중 “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”을 “교육협력부문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3조(시상부문등)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과 같다. 1. ~ 6. (생략) 7. <u>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</u> 4명	제3조(시상부문등)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과 같다. 1. ~ 6. (조례안과 같음.) 7. <u>교육협력부문</u> 4명